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집행부제출】

검 토 보 고 서



2025. 7.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7. 17.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경제지원과장)
- 제출일자: 2025. 7. 4.(금)
- 회부일자: 2025. 7. 4.(금)
- 검토기간: 2025. 7. 7.(월) ~ 7. 11.(금)

2. 제안이유

- 반려가구를 위한 복지 및 여가 공간 제공 및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운영되어 온 반려견 놀이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11. 30.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놀이터 시설 운영과 반려동물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현 위탁현황
달서 반려견 놀이터	성서공단로 287(장동)	7,672㎡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관리동, 주차장, 산책로	계명문화대학교 (2023. 12. 1.~2025. 11. 30.)

※ 위탁예산: 284,951천원(2025년 기준), 운영인력: 5명(비상근 시설장 별도)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내용

-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운영
- 달서 반려견 놀이터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
- 달서 반려견 놀이터 펫카페 관리·운영
- 달서 반려견 놀이터 전용 홈페이지 운영
-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교육·체험·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반려동물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협력을 통한 시설 홍보
-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간: 2025. 12. 1.~2028. 12. 31.(3년 1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위탁계약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다양한 반려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반려 가구를 위한 복지 공간 제공,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전면 개장한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연면적 7,672㎡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 대형견 놀이터, 주차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팀장을 포함한 5명의 운영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장 이후 지난 5월까지 이용자 21,394명(월 1,337명), 반려견 16,031마리(월 1,002마리)가 방문하였음.
- 재위탁 방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과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반려견 놀이터 업무의 전문성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위탁의 방법이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 계 법 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